

정책연구 2009-10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모색

2009. 11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www.jdi.re.kr](http://www.jdi.re.kr)



# 발 간 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개방화, 청·장년층의 이탈, 농가부채의 급증과 소득 감소로 이미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농촌사회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하고, 노동력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초고령 사회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무엇보다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은 여전히 법적·제도적 지위 확립이 되지 못하고 돌봄과 노동의 다중역할로 부담이 가중되는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002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영유아 보육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부터는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38개에 불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체 여성농업인센터의 15.8%인 6개소로 제주시 지역 2개소, 서귀포시 지역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연구가 여성농업인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9. 11.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유 덕 상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3. 연구의 기대효과 .....	3
II. 이론적 배경 .....	4
1. 여성농업인 현황 .....	4
1) 여성농업인 개념 .....	4
2) 여성농업인 현황 .....	6
2. 여성농업인 정책 .....	12
1)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 .....	12
2) 여성농업인 관련 정부 정책 .....	13
3) 여성농업인 관련 법규 .....	23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	26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통계 .....	26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	30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	34

III.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분석 .....	37
1.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	37
1) 여성농업인센터의 변천사 .....	37
2)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	43
3) 여성농업인센터 사례 조사 .....	44
4) 여성농업인센터 사례 조사 시사점 .....	63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태 .....	64
1) 제주여성농업인센터 현황 .....	64
2)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71
3)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상의 어려움 .....	74
IV.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77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분석과 함의 .....	77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79
참고문헌 .....	81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	82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 .....	85
부록 3.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	87

# 표 목 차

<표 1> 농가 및 농가인구 .....	7
<표 2> 총가구와 농가 추이 .....	7
<표 3> 총인구 및 농가인구 추이 .....	8
<표 4> 연령별 농가인구 .....	9
<표 5> 농가인구의 고령화 현황 .....	10
<표 6> 성별 고령화율 .....	10
<표 7> 전·겸업농가 현황 .....	11
<표 8> 경지규모별 농가 .....	12
<표 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 .....	15
<표 10> FAO 행동계획(1995) .....	61
<표 11> FAO 제31차 총회 가운데 여성농업인 관련 조항 .....	71
<표 12> 제1차 여성농업인정책 핵심 정책 과제 .....	9
<표 13>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경과 .....	2
<표 14>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	4
<표 15> 여성농업인 관련 규칙 .....	8
<표 16> 전·겸업농가 현황 .....	26
<표 17> 농가 인구현황 .....	8
<표 18> 연령별 농가인구 .....	9
<표 19>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	3
<표 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	3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	3
<표 22>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확대 .....	34

<표 2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	3
<표 25> 2002년 집행세부기준 .....	3
<표 26> 2004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조정현황 .....	39
<표 27> 여성농업인센터 개설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 .....	4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개설 연도 .....	4
<표 29> 여성농업인센터 지역 인구 .....	5
<표 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육성계획 .....	7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계속지원여부 심사표 .....	7

# 그림 목 차

<그림 1>	총가구와 농가 연도별 추이 .....	8
<그림 2>	총인구와 농가인구 연도별 추이 .....	9
<그림 3>	전업·겸업 농가인구 변화(2000~2008) .....	11
<그림 4>	농림수산물식품부 조직도 .....	13
<그림 5>	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전 .....	20
<그림 6>	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목표 .....	21
<그림 7>	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	21
<그림 8>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추이 .....	27
<그림 9>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인구 추이 .....	28
<그림 10>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 추진체계 .....	30
<그림 11>	제주시·서귀포시 정책 추진체계 .....	31
<그림 12>	여성농업인센터 연도별 증가 추이 .....	40
<그림 13>	서천여성농업인센터 홈페이지 .....	44
<그림 14>	안동여성농업인센터 홈페이지 .....	59

# 사 진 목 차

<사진 1> 서천여성농업인센터 전경 .....	4
<사진 2> 서천여성농업인센터 어린이집 .....	4
<사진 3> 서천여성농업인센터 연계 민박집 표식 .....	4
<사진 4> 거창여성농업인센터 .....	5
<사진 5> 거창여성농업인센터 소식지 .....	5
<사진 6> 거창여성농업인센터-어린이집 .....	5
<사진 7>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전경 .....	5
<사진 8> 합천여성농업인센터 내부 .....	5
<사진 9> 합천여성농업인센터(시내) 도서관 .....	7
<사진 10> 안동여성농업인센터 .....	8
<사진 11> 안동여성농업인센터 시설 .....	6
<사진 12> 안동여성농업인센터 프로젝트 사업 공모 .....	6
<사진 13> 안동여성농업인센터 정기 소식지 .....	6
<사진 14> 초등학교 옆 센터 위치(센터 앞 놀이터) .....	8
<사진 15> 대정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1) .....	7
<사진 16> 대정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2) .....	8
<사진 17> 대정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3) .....	8
<사진 18> 대정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4) .....	8
<사진 19> 대정여성농업인센터 전경 .....	9
<사진 20> 함덕여성농업인센터 전경 .....	7
<사진 21> 함덕여성농업인센터 내부 및 프로그램 운영 .....	7
<사진 22> 김녕여성농업인센터 전경 .....	7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농업인센터는 2001년 충북 영동, 충남 서천, 경북 안동, 경남 진주 등 4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여 현재 전국에 3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 특별자치도는 2009년 함덕, 성산, 대정, 서귀포, 안덕, 김녕 등 전국 여성농업인센터의 15.8%로 여성농업인 인구에 비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확대는 2002년 18개소로 전년대비 350%로 확대되면서 농림부가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직접 사업전반을 관리하였다. 당시 경기 용인, 강원 횡성·양구, 충북 영동, 충남 서천·홍성, 전북 진안·부안, 전남 나주·장성, 경북 안동·영양, 경남 진주·거창, 제주 북제주·남제주 등의 지역에 생겼다. 당시 여성농업인육성법시행령('02.6.29) 및 시행규칙('02.7.13)을 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농림부 고시 제2002-50호, '02.10.26)하여 2003년부터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을 각 지역실정에 맞게 하여 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사업에 적용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센터 사무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2008년까지 160여개소로 확대하려던 농림부의 계획은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사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추진 당시 규정되어 있는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을 여전히 추진하도록 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역시 각 센터별로 사업과 운영이 차별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내용을 바탕으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여성농업인센터의 현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센터의 성과와 한계점을 밝혀냄으로써 여성농업인센터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센터가 개별 지역 여성농업인을 위한 고충상담의 창구로서의 역할과 돌봄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하나로써의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를 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농업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센터 관련 타 지역 사례를 통해 제주지역의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례로 삼고자 한다.

셋째, 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된 정책과 연구를 통해 지역 여성농업인센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맞춤형 지침 및 지표 개발을 통해 향후 여성농업인센터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정책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를 분석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지침 개발을 통해 탄력적인 센터 운영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개별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여성농업인 현황

#### 1) 여성농업인 개념

‘여성농업인’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이나 농촌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농가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명칭을 비롯 최근 역할 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농사에 참여하는 여성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통일하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비롯하여 농촌에 있는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농촌부녀자 또는 농촌여성’이라는 말로 지칭함에 따라 다양해진 농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여성을 지칭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하면서 ‘여성농업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과 함께 ‘농촌여성’과 ‘여성농민’이 여전히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용어의 사용이 역할에 대한 의미를 함축한다는 측면에서 농사에 참여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는 그동안 어려운 문제였다(김경미, 1991).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촌여성’이란 용어는 농촌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총칭하는 편의적인 말로서 수동적인 여성으로 농촌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집단을 지칭하고, 주로 공공기관이나 학계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여성권익운동적 성격이 강한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농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여전히 학계와 정책전문가들 역시 아직도 ‘농촌여성’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가끔 ‘여성농업인’과 혼용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동일한 대상에 대한 용어의 차이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명칭과 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여성농업인 단체는 4개 단체로 농주부모임전국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이 있다.

####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목적 :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익을 신장하여 농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젊은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결성, 현재 6만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창립 : 1993년

홈페이지 : <http://www.nonggajubu.com>

#### **생활개선중앙회**

목적 : 농촌생활의 과학화, 합리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삶의 터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 합리적인 가정관리, 전통생활문화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촌여성단체

창립 : 1958년 418개로 시작하여 현재 1,636개 조직 95,205명 활동

홈페이지 : <http://www.rwlf.co.kr>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목적 : 하늘 같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돌보고, 집안 대소사를 살피는, 팔방미인 어머니 여성농민. 쓰러져 가는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농업노동을 하고 있는 억척꾼 여성농민. 여성농민이 역사와 생산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농촌과 농업을 힘찬 생명력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1989년 조직하였으며, 자주적 여성농민조직을 건설하여 여성농민의 전국적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여성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의 자주화, 조국통일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 (전여농규약 중)

창립 : 1989년

홈페이지 : <http://www.kwpa.org>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목적 : 전국 후계자 부인과 여성 후계자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의 제반 문제 해결 및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여 복지 농촌 건설에 기여함

창립 : 1996년

홈페이지 : <http://www.waff.or.kr>

그 밖에 여성농업인 관련 개념을 법률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법률 제 657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 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누구인가에 하는 것은 그 역할에 대한 이해와 평가 정도에 따라 달리 불려지고 있는데, 이 명칭이 법규나 정책 자료에 활용되어 나타나게 되면 이로 인해 법적·제도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법적·제도적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양적·질적 기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에 따라서 본 글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여성농업인이라고 명칭을 하고자 한다.

## 2) 여성농업인 현황

2008년 12월 기준 농가인구는 121만 2천 가구로 전년 대비 1.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인구는 남자인구가 3% 감소한 것에 비하여 2.4%가 감소하였으나, 여자의 비중이 51.6%로 남자보다 10만2천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가 감소함에도 여자인구의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천가구, 천명, %)

구분	2006	2007	2008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농가수	1,245	1,231	1,212	-19	-1.5
전업농가	785 (63.0)	755 (61.4)	707 (58.3)	-48	-6.4
겸업농가	460 (37.0)	476 (38.6)	505 (41.7)	-29	-6.2
농가인구	3,304	3,274	3,187	-87	-2.7
여자	1,697 (51.4)	1,684 (51.4)	1,644 (51.6)	-40	-2.4
남자	1,607 (48.6)	1,590 (48.6)	1,542 (48.4)	-48	-3.0

출처 : 통계청.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2009. 2. 25. 보도자료

농가인구는 최근 5년 평균 2%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의 비중은 최근 5년간 평균 1.9%씩 감소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8년 12월 현재 7.3%이며,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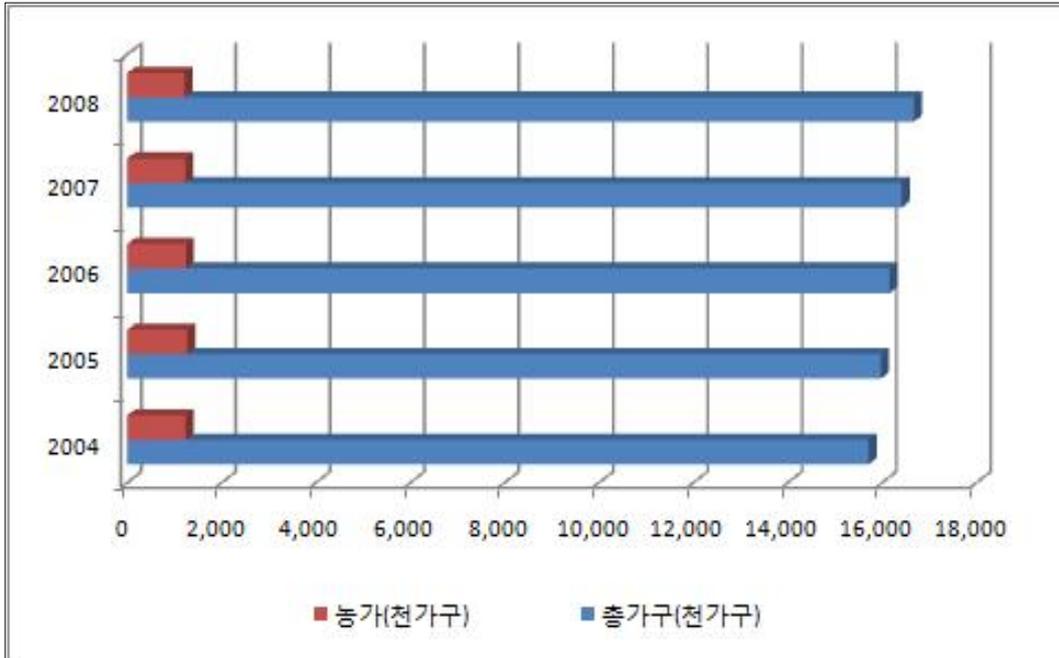
<표 2> 총가구와 농가 추이

(단위 : 천가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가구(천가구)	15,720	15,971	16,158	16,417	16,673
농가(천가구)	1,240	1,273	1,245	1,231	1,212
농가증감률	-1.9	2.6	-2.2	-1.1	-1.5
농가비중	7.9	8.0	7.7	7.5	7.3

출처 : 통계청.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2009. 2.25. 보도자료

<그림 1> 총가구와 농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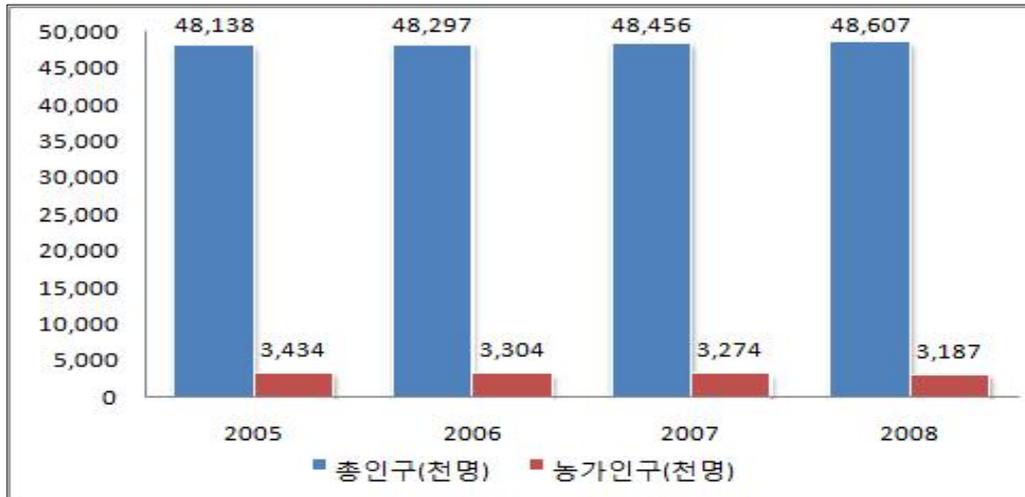
<표 3> 총인구 및 농가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인구(천명)	48,039	48,138	48,297	48,456	48,607
농가인구(천명)	3,415	3,434	3,304	3,274	3,187
농가인구증감률	-3.3	0.6	-3.8	-0.9	-2.7
농가인구비중	7.1	7.1	6.8	6.8	6.6

출처 : 통계청.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2009. 2.25. 보도자료

<그림 2> 총인구와 농가인구 연도별 추이



연령별 인구 비중에 있어 70세 이상의 인구만이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20대와 40대의 인구가 각각 7.9%, 7.5%씩 감소함에 따라 청장년층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의 노동력 감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여성이 농촌에서의 다중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현상이다.

<표 4>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농가인구	10세미만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65세 이상
2007	3,274 (100.0)	165 (5.0)	286 (8.7)	239 (7.3)	219 (6.7)	397 (12.1)	592 (18.1)	719 (22.0)	656 (20.0)	1,052 (32.1)
2008	3,187 (100.0)	154 (4.8)	267 (8.4)	220 (6.9)	209 (6.5)	368 (11.5)	584 (18.3)	699 (21.9)	686 (21.5)	1,060 (33.3)
여자	1,644 (100.0)	72 (4.4)	124 (7.5)	105 (6.4)	92 (5.6)	190 (11.6)	317 (19.3)	369 (22.4)	376 (22.9)	579 (35.2)
남자	1,542 (100.0)	83 (5.4)	143 (9.3)	115 (7.4)	117 (7.6)	117 (11.5)	267 (17.3)	330 (21.4)	311 (20.1)	481 (31.2)
증 감	-87	-11	-19	-19	-11	-30	-8	-20	<b>30</b>	8
증감률	-2.7	-6.5	-6.7	-7.9	-4.9	-7.5	-1.4	-2.8	<b>4.6</b>	0.8

출처 : 통계청,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2009. 2.25. 보도자료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일반 고령화의 10.3%에 비하여 23.0%나 높은 33.3%로 매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특히 전남은 38.3%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남자에 비하여 여성의 고령화율이 더 높은 것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5> 농가인구의 고령화 현황

(단위 :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8.5	10.3	9.3	8.0	8.1	7.9	6.3	8.0	14.4	13.1	15.1	15.7	19.3	15.6	11.7	11.6
농가	15.9	21.5	27.1	31.7	24.4	28.3	31.0	26.4	31.8	33.4	34.2	34.0	38.3	37.7	35.2	22.2

출처 : 통계청,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2009. 2.25. 보도자료

<표 6> 성별 고령화율<sup>1)</sup>

(단위 : 천명, %p)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률
농가고령화율	29.3	29.1	30.8	32.1	33.3	1.1%p
여자	31.0	30.8	32.5	34.0	35.2	1.2%p
남자	27.6	27.3	29.0	30.1	31.2	1.1%p
전국고령화율	8.7	9.1	9.5	9.9	10.3	0.4%p

출처 : 통계청,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2009. 2.25. 보도자료

1)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표는 3단계로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14% 미만일 때, 14~20%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형태 역시 전업농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2종 겸업농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지 면적 또한 2.0ha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겸업 증가와 중규모 이상의 기업농으로 농업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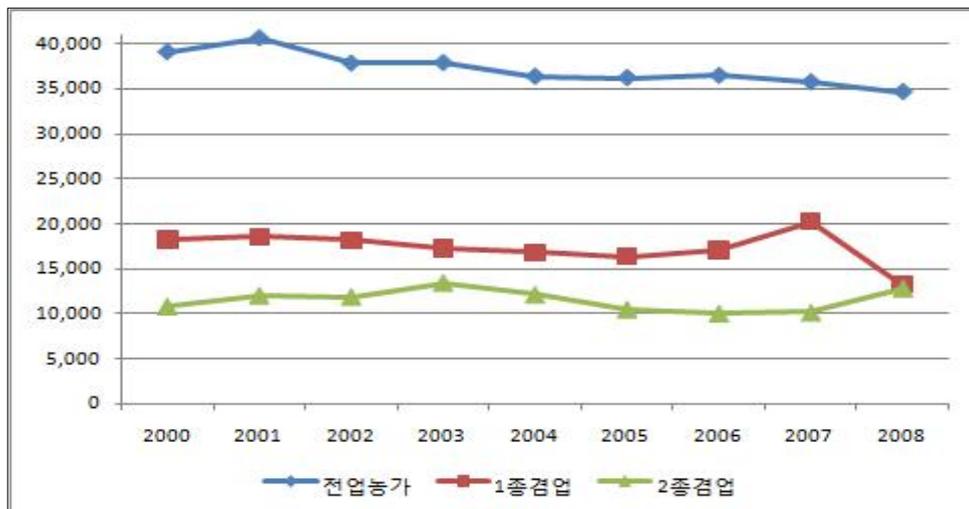
<표 7> 전·겸업농가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분	합계	전업	겸업 <sup>2)</sup>						
			구성비	계	구성비	1종	구성비	2종	구성비
2007	1,231	755	61.4	476	38.6	144	11.7	332	27.0
2008	1,212	707	58.3	505	41.7	160	13.2	345	28.5
전년대비 증감	-19.0	-48.3	-3.0	29.4	3.0	15.0	1.5	13.5	1.5

출처 : 통계청.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2009. 2.25. 보도자료

<그림 3> 전업·겸업 농가인구 변화(2000~2008)



2) 겸업농가에 있어 1종겸업농가는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이 농외소득을 초과하는 농가이며, 2종겸업농가는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표 8> 경지규모별 농가

(단위 : 천가구, %)

지역	합계	경지없는 농가	경지있는 농가						
			소계	0.5ha 미만	0.5~ 1.0	1.0~ 2.0	2.0~ 3.0	3.0~ 5.0	5.0ha 이상
2007	1,231 (100.0)	16 (1.3)	1,215 (98.7)	490 (39.8)	313 (25.4)	246 (20.0)	80 (6.5)	55 (4.5)	31 (2.5)
2008	1,212 (100.0)	14 (1.2)	1,198 (98.8)	477 (39.3)	308 (25.4)	244 (20.1)	81 (6.7)	56 (4.6)	32 (2.7)
전년대비 증감률	-1.5	<b>-12.5</b>	-1.4	-2.7	-1.6	-0.8	1.3	1.8	<b>3.2</b>

출처 : 통계청,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2009. 2.25. 보도자료

## 2. 여성농업인 정책

### 1)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

여성농업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촌정책국의 3개 과 가운데 하나인 농촌사회과의 팀제(농촌여성팀장)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1998년 3월 기획관리실 소속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별도의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정책이 추진되었다.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01~'05)계획 수립, 여성농어업인육성법('01.12.31)과 시행령('02.6.29)·시행규칙('02.7.13)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8월 농업구조정책국 소속 여성사회여성팀으로 개편되면서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05.06.30)하였으며, 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06~'10)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림 4> 농림수산식품부 조직도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조직도(<http://www.mifaff.go.kr>), 재구성

## 2) 여성농업인 관련 정부 정책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대거 이동하면서 가속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참여는 농업노동참여 시간이 늘어나고 남성의 영역까지 전담을 하고 있지만, 가사노동 등 돌봄의 경감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논농사에 종사하는 남성과 달리 밭농사 위주로 농한기와 농번기가 구분 없이 강한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 관련 정책들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유엔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결정하고 ‘유엔여성 10년’ 선포를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75년 멕시코의 세계여성회의 당시 세계여성의 전반적인 지위 향상에 필요한 ‘세계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에서는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1995년 9월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는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종합평가와 함께 2000년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주요 분야

에서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7년 처음 여성차별철폐선언이 등장을 하였다. 선언은 차별금지와 그를 위한 법적인 조치, 의식개선, 평등, 민법에 있어 평등, 차별적인 형법 규정 철폐, 매춘 금지, 교육의 평등, 동등한 권리, 개별 국가의 실행 권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계승하면서 1975년 “여성차별철폐협약<sup>3)</sup>”을 제정하였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억제를 철폐함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촉진하고자 구체적인 30개 조항으로 구성하였다. 1979년 유엔 제34차 총회에서 채택하면서 29개국이 비준한 198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여 1984년 우리나라 역시 비준서를 기탁하고 1985년 1월 7일 동 협약이 조약 제855호로 공포되어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 후 북경여성회의에서 다시 행동강령으로 12개 주요 분야<sup>4)</sup>를 선정하여 전략목표와 행동지침을 제시하여 제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기구의 설립 및 강화, 비정부 기구 특히 여성단체의 역할 증진,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시 성관점을 고려하여 여성문제를 주류화 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며, 약자로 CEDAW라 한다. 1967년 여성차별문제만을 별도로 다룬 유엔 최초의 문서인 ‘여성차별철폐선언’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후 12년만인 1979년 유엔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이 협약이 채택되었고 '81년 9월 발효되었다.

협약 제1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 그리고 그 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인권을 기초로 한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 향유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지닌 성별에 근거한 모든 종류의 차별, 배제 또는 제한’이라 정의한다. 이와 함께 각 조항에서는 정치(제7조), 국제(제8조), 국적(제9조), 교육(제10조), 고용(제11조), 보건(제12조), 경제·사회(제13조), 결혼과 가족관계(제16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한 협약 당사국은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최소 4년에 한번씩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186개국이 비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0번째(1983년)로 이 협약에 비준하고 '85년부터 발효가 되었다.

4) 행동강령의 12개 주요 분야는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보건,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의 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아 등이다.

<표 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

---

제14조

1. 당사국은 농촌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농촌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농촌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농촌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여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여성에게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해독 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 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 (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 (바) 모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
    -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 개혁과 재정착 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유엔환경개발회의(1992, 리우)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의제 21(Agenda 21)’, 세계인권회의(1993)의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 국제인구개발회의(1994)의 ‘세계인구행동계획’, 사회개발정상회의(1995)의 ‘코펜하겐 선언 및 실천계획’, 세계교육회의(1990)의 ‘만인을 위한 세계교육선언, 기초적 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지침’, 세계아동정상회의(1990)의 ‘아동을 위한 세계선언 및 행동계획’ 등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농업부문의 경우 여성관련 정책은 세계식량기구(FAO)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부터 정책에 있어 여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우선 1995년 제28차 회의에서 개발과 여성(WID)분야의 “FAO 행동계획(FAO Plan of Action for Women in Development)”을 채택하면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FAO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기본틀이 구축되었다(변화순 외, 2001).

<표 10> FAO 행동계획(1995)

- 
- 농업 및 농촌 개발의 성차원(gender dimension)에 대한 양적, 질적 자료와 정보의 사용 가능성과 정확성, 이용도를 높인다.
  - FAO와 회원국가의 개발전문가가 농업 및 농촌 개발 접근에 성 관점을 통합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 훈련활동을 개발하고 이용한다.
  - 농촌여성이 자신들의 노동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술과 역량을 강화한다. FAO는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노동 영역에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조치의 채택을 증진할 것이다.
  - 성 관점을 통합한 농업 및 농촌 개발 정책의 수립과 적용을 지원한다.
- 

2001년 제31차 FAO 총회 의제 C2001/9 FAO Plan of Action ON Gender and Development(2001~2007)는 여성정책을 위한 전략으로써 기존의 WID<sup>5)</sup>가 여성을 여전히 주변적이고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북경대회의 행동강령에서 드러난 성분석(Gender Analysis)을 기초로 GAD(Gender in Development)전략을 적극 도입하였다.

---

5) WID(Women in Development)전략은 발전에 있어 여성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초기 여성정책을 정책으로 개입하면서 등장한 전략으로 모성발전, 교육 등에 있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다. 주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정책적 전략으로 등장하였다.

## <표 11> FAO 제31차 총회 가운데 여성농업인 관련 조항

---

제1-9조(배경)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성(gender)과 함께 취약계층과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함

제10조(성과 함께 발전하는 FAO행동계획의 목적)

1. 조직적인 활동 속에서 여성주류화를 통한 지속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FAO가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개선
2. FAO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주류화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과 효과적 달성
3.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한 폭넓은 연대와 지원
4. 본부 및 지부에서 여성주류화에 관련된 FAO 전문가의 활동여건 조성

제15-17조(기본개념) 성(gender)의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

제19-21조(사회경제적 상황과 성분석 체계)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성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취약집단(disadvantaged people)의 우선적 요구의 충족, 발전에 지역 주민의 참여 등이 기본 전제임

제23-33조(농업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북경여성대회의 실천강령, 세계화, 인구변동-에이즈, 농촌노령화, 이농 등 자연자원의 압력 증가-기후변동, 자연재해 등

제34-35조(FAO 성과 발전계획 2002-2007의 목표)

1. 충분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식품공급을 위한 접근성의 평등화
2. 경제적·사회적 진전과 모든 분야의 복지 증진을 통한 지속적 농업과 농촌발전에 계속적인 기여
3. 식량과 농업과 관련된 자연자원의 보전, 개선과 지속적 이용

제93조(식량과 농업관련 정보의 공유) 식량과 농업관련 정보 중에서 성 관점의 정보와 여성 관련 전문적 연구결과 등의 적극적 공유

제118조(FAO 본부와 지부의 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 여성주류화를 위한 본부와 지부의 협력을 지원하고 행동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FAO는 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한 10월 15일을 제4차 북경여성대회 당시 식량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함께 기억되도록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제4차 북경대회의 영향으로 정부 정책의 모든 영역에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도입하면서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 1998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였다. 물론 1950년대부터 농촌가정과를 중심으로 생활개선지도사업이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농촌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경제, 복지,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까지 수립되면서 다양한 여성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의 계획수립과 추진은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및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2001~2005)」 수립, 「여성정책 기본계획 20대 과제」 등이 있다. 여성농업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들 정책을 바탕으로 2006년 『여성농업인육성법』('06.1.1 개정)이 개정되면서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정영태, 2005).

또한 김경미(2004) 등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목표와 관련 여성이 농사에 참여하는 만큼 남성과 동등한 권리는 누리는 정도(농업노동평등권<sup>6)</sup>), 농사참여 여성에 게 맞는 교육, 의료, 생활 문화 등 복지서비스 제공도(여성복지권<sup>7)</sup>), 지역 사회주민으로서 여성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농촌 발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정도(시민참여권<sup>8)</sup>)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

6) 농업노동평등권은 생산노동권(기술+노동), 소유 경영권, 분배, 소득, 자원 활용권 등을 포함 10개 항목 14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7) 여성복지권은 성 역할 및 의식의 평등, 건강과 복지, 보장과 청구권 등 3개 항목 8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8) 시민참여권은 교육권, 자기대표권, 자기개발권, 사적자유권 등 4개 주요 항목 11개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12> 제1차 여성농업인 정책 핵심 정책 과제

기본전략	핵심정책과제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1-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훈련 -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시스템 구축 - 여성농업 해외농업연수 (1-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
(2)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2-1)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 확대 -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 -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 - 여성농업인단체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의 전문 직업의식 고양 (2-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3-1)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2)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4)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4-1) 여성농업인 정책과제의 개발 연구 (4-2)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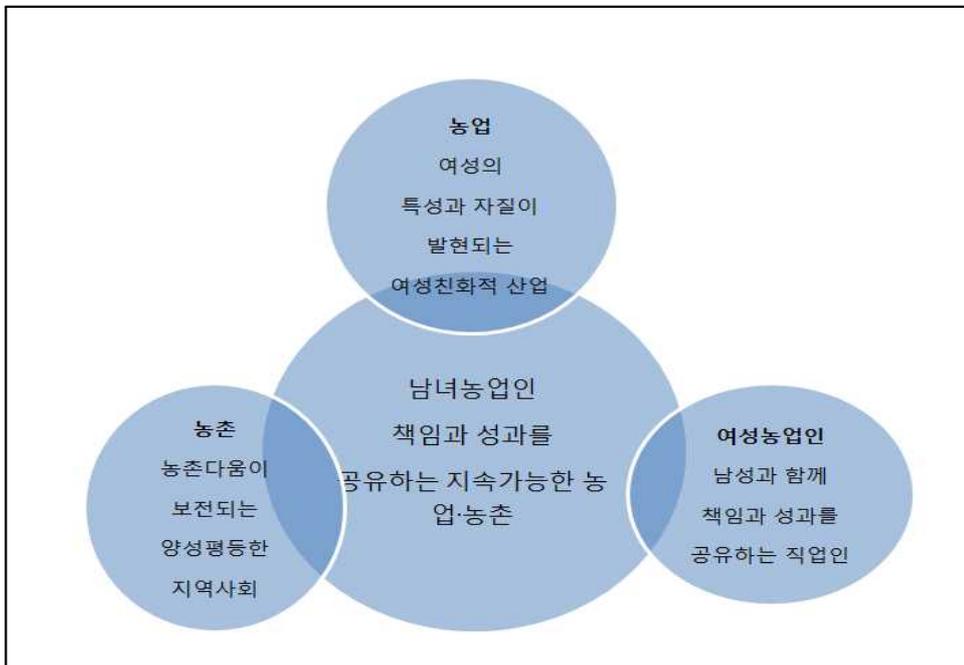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01~'05)은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협업자 또는 공동경영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여성농업인 정책의 양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5개 부분 22개 과제를 수립 추진하였으나 세부·시행·15개 과제로 추진실적과 계획이 제시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게다가 당시 농림부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시 영농방향의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였다고 하지만, 정책을 위하여 수요조사, 자원조달여부, 우선순위,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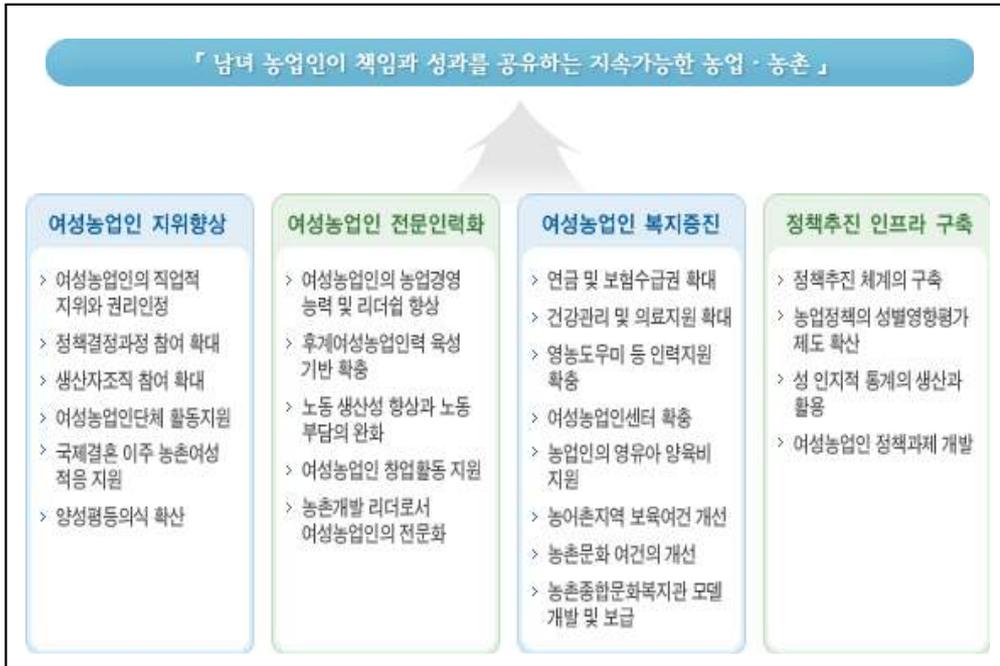
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평가·보완하면서 수립된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정책의 목표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파트너십 정착에 두었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신기술·신지식농업에의 대응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위향상 촉진,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다.

<그림 5> 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비전



<그림 6> 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목표



<그림 7> 제2차 여성농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총 4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경과

구분	시기	내용
제1기 여성농업인 정책 태동기	1950년대 ~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가정 중심의 생활개선지도사업 위주</li> <li>- 여성농업인 정책이 아닌 농촌개발 촉진수단으로 활용</li> <li>-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 무관심</li> <li>- 유엔차별철폐협약 가입(1986년 비준)</li> <li>- 1994년 농어촌 발전 특별대책 수립시 제한적으로 여성농업인 정책 언급</li> <li>- 여성농업인 정책은 주로 계획단계에 머물렀음</li> </ul>
제2기 여성농업인 정책 도입기	1995년 ~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북경여성대회를 계기로 정부 정책의 성관점 도입</li> <li>- 1996년 농림부 직속 농촌여성정책자문기구 설치</li> <li>- 1998년 농림부 내 여성농업인정책담당관실 설치</li> <li>-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01~'05)」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부담 완화와 권익 신장 포함</li> <li>-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01~'05)」 수립</li> </ul>
제3기 여성농업인 정책 확장기	2001년 ~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01~'05)」</li> <li>-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06~2010)」</li> <li>- <b>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에서의 여성의 중요성 대두</b></li> <li>- 지자체의 여성농업인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li> <li>- 「여성농어업인 육성법」('06.1.1 개정)</li> <li>-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개시 및 확대기</li> <li>- 여성농업인센터 지방이양(2005년)</li> </ul>
제4기 여성농업인 정책 정체기	2008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제정</li> <li>-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관련 기본계획 수립</li> <li>-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정체기</li> <li>- 여성농업인 사업의 정체기</li> </ul>

### 3) 여성농업인 관련 법규

여성 농업인 관련 법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타)일부개정 2009.5.27 법률 제9717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타)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 20677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타)일부개정 2009.10.1 농림수산물부령 제84호]이 있다.

여성농업인과 관련 가장 먼저 제정된 조례는 2006년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 관련 조례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위탁사무와 관련된 것을 조례에 담았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지위향상 등을 위한 조례가 아닌 사무위탁을 위한 조례로 실질적인 조례가 가장 먼저 발의가 된 것은 충남 아산시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007년 8월 통과시켰다.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와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사업이나 작목반, 여성창업농과 여성농업경영인 등에게 용자사업을 우선 펼치고, 외부 위탁 교육 및 여성농업인이 창업이나 보수 교육을 원할 경우 교육비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07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여 2009년까지 모두 9개 지자체에 34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2007년 아산시, 원주시, 제천시, 영동군, 아산시, 전라북도, 영광군 등 7개 지역, 2008년은 가평군, 나주시, 강진군, 문경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역에서 제정을 하였다. 2009년 남양주시, 홍성군, 예산군,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양평군, 순천시, 보성군, 속초시, 옥천군, 상주시, 성주군, 울진군,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19개 지역에서

제정하였다. 광역지자체로 살펴보면 경기도 3개 지역, 강원도 3개 지역, 충청북도 4개 지역, 충청남도 4개 지역, 전라북도 6개 지역, 전라남도 7개 지역, 경상북도 5개 지역, 경상남도 1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개 등으로 경상남도가 가장 조례 제정이 열악한 실정이다.

<표 14>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지자체		법규명	제/개정일	공포일	소관부서
경 기 (3)	남양주시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09-03-26	2009-03-26	유기농업과
	가평군	가평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8-02-19	2008-02-19	
	양평군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10-16	2009-10-16	친환경농업과
강 원 (3)	강원도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7-03	2009-07-03	농어업정책과
	원주시	원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7-12-31	2009-03-20	농업기술과
	속초시	속초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04-15		농업기술센터
충 북 (4)	충청북도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8-04-04	2008-04-04	농업정책팀
	제천시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8-11-07	2008-11-07	농업축산과
	옥천군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4-20	2009-04-20	친환경농정과
	영동군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2-27	2007-12-27	농정과
충 남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09-04-15	2009-04-15	농업정책과
	아산시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09-17	2007-09-17	
	홍성군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4-24	2009-04-24	농수산과
	예산군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5-12	2009-05-12	농정과

지자체	법규명	제/개정일	공포일	소관부서	
전 북 (6)	전라북도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7-12-28	2007-12-28	농업정책과
	군산시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09-09-30	2009-09-30	항만경제국 농정과
	익산시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2009-08-14	2009-08-14	농업기술센터
	남원시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4-29	2009-04-29	경 제 건 설 국 농정과
	김제시	김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5-25		친환경농업과
	고창군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09-03-31	2009-03-31	농업진흥과
전 남 (7)	전라남도	전라남도남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2008-01-09	2008-01-09	농업정책과
	순천시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1-09	2009-01-09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나주시	나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8-01-14	2009-01-09	자치농정과
	보성군	보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7-07	2009-07-07	농산과
	강진군	강진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8-07-03	2008-07-03	
	무안군	무안군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06-02-24	2006-02-24	
	영광군	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2-31	2007-12-31	
경 북 (5)	경상북도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8-09-22	2008-09-22	농업정책과
	상주시	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2-29	2009-12-29	농 립 건 설 국 농정과
	문경시	문경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8-01-08	2008-01-08	농정과
	성주군	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1-08	2009-01-08	농정과
	울진군	울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10-01	2009-10-01	농업기술센터
경남 (1)	경상남도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9-08-13	2009-08-13	농업정책과
제주 (1)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08-04-02	2008-04-02	농업정책과

<표 15> 여성농업인 관련 규칙

지자체	법규명	제/개정일	공포일	소관부서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	2007-08-08	2007-08-08	농업정책과

###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통계

제주특별자치도 농가는 35,735가구로 전년대비 3.1%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이다. 전업농의 경우 오히려 2007년 18.5% 증가에 비하여 34.4%가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1종과 겸업은 60.4%, 2종 겸업 농은 26.3%가 각각 증가함에 따라 2007년과 달리 농가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전·겸업농가 현황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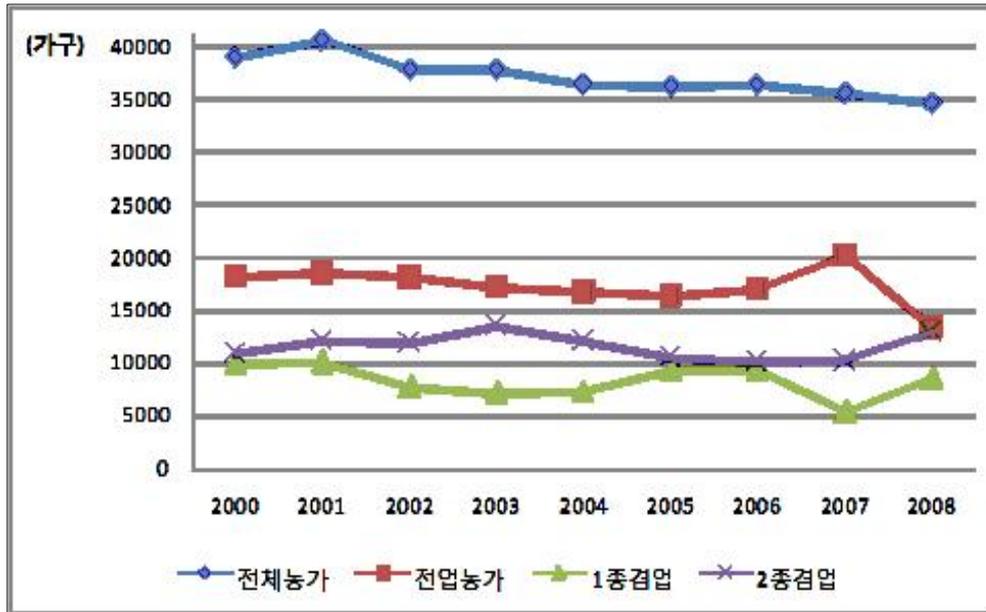
구분	합계	전업	겸업 <sup>9)</sup>						
			구성비	계	구성비	1종	구성비	2종	구성비
2002	37,850	18,218	48.1	19,632	51.9	7,708	20.4	11,924	31.5
2003	37,893	17,305	45.7	20,588	54.3	7,120	18.8	13,468	35.5
2004	36,366	16,825	46.2	19,542	53.8	7,375	20.3	12,167	33.5
2005	36,218	16,385	45.2	19,833	54.8	9,263	25.6	10,570	29.2
2006	36,465	17,904	49.1	19,371	53.1	9,277	25.4	10,094	27.7
2007	35,735	20,259	56.7	15,476	43.3	5,284	14.8	10,192	28.5
2008	34,645	13,298	38.4	21,347	61.6	8,475	24.4	12,872	37.2
전년대비 증감률	-3.1	<b>-34.4</b>	-	37.9	-	<b>60.4</b>	-	26.3	-

출처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농업총조사보고서』

9) 겸업농가에 있어 1종겸업농가는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이 농외소득을 초과하는 농가이며, 2종겸업농가는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농가의 경우 2008년 전국 1,212,050가구로 전국에서 제주도가 점유하는 비율은 2.9%로 나타났으며, 전업농의 경우 1.9%, 1종겸업 5.3%, 2종겸업 3.7%로 나타났다.

<그림 8>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추이



농가인구는 102,192명으로 전년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나타났다. 농가인구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인구가 50%를 조금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농가인구는 전국 농가인구 3,186,753명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의 경우 2006년 이후 20%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1999년이 26.1%로 최근 10년간 가장 농가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촌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노동력과 함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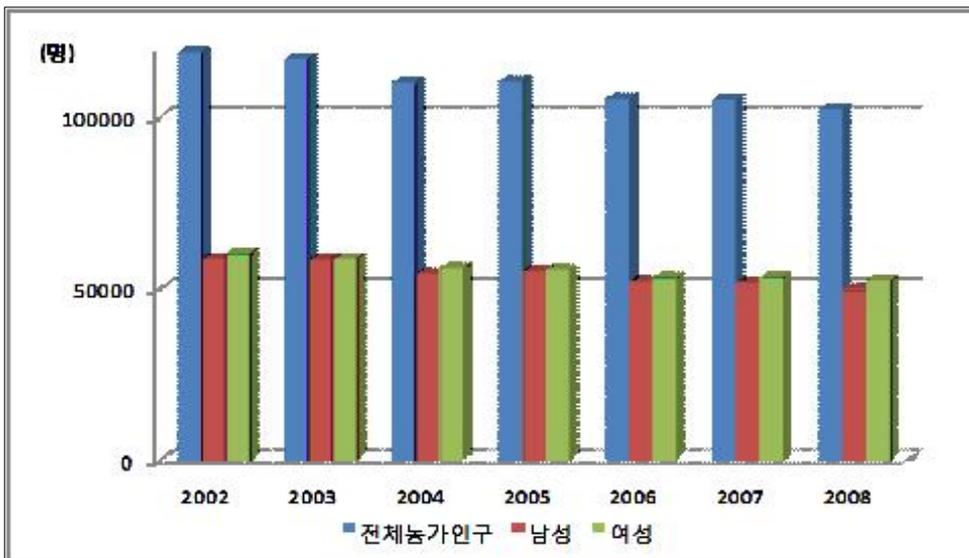
<표 17> 농가 인구현황

(단위 : 명, %)

구분	가 구			인 구				비율 (%)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계	남자	여자	
1999	173,612	40,330	23.2	538,744	136,209	66,748	69,461	25.3
2000	177,600	39,114	22.0	542,368	129,152	63,839	65,313	23.8
2001	183,248	40,672	22.2	546,889	131,404	65,458	65,947	24.0
2002	188,760	37,850	20.1	550,831	118,709	58,620	60,089	21.6
2003	194,855	37,893	19.4	552,297	116,967	58,327	58,640	21.2
2004	199,989	36,366	18.2	555,362	109,955	54,204	55,751	19.8
2005	204,635	36,218	17.7	557,569	110,281	54,899	55,382	19.8
2006	208,424	36,465	17.5	558,496	105,103	51,949	53,154	18.8
2007	211,850	35,735	16.9	559,258	105,004	51,613	53,391	18.8
2008	214,681	34,645	<b>16.1</b>	560,618	102,192	49,942	52,250	<b>18.2</b>
제 주 시	155,398	18,166	11.7	407,498	53,112	25,740	27,372	13.0
서귀포시	59,283	16,480	27.8	153,120	49,080	24,202	24,878	32.1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http://www.agri.jeju.kr/jeju/contents/index.jsp?meId=020301&paSeq=9>

<그림 9> 제주특별자치도 농가인구 추이



연령별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49세 연령까지 남자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50세 이상으로 갈수록 여성비가 높은 실정이며, 특히 70세 이상에 있어 동일 연령대에 여성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경우 여성인구가 전체 농가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 명, %)

구분	합계	0~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2005	110,281	50.2	17,895	46.2	5,823	47.5	12,007	45.1	12,908	44.2
2006	105,103	50.6	16,641	46.2	5,945	47.1	8,750	45.5	11,670	44.2
2007	105,004	50.8	15,881	48.5	6,621	45.2	9,034	44.8	11,947	46.2
구성비	100		15.1	7.3	6.3	2.9	8.6	3.9	11.4	5.3

구분	40~49세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2005	15,302	49.6	16,337	52.3	9,357	52.0	9,352	53.0	11,282	62.5
2006	14,429	52.0	14,918	51.2	9,791	47.4	9,245	54.6	13,712	63.4
2007	14,133	49.8	15,040	51.6	9,298	49.4	9,383	54.0	13,669	63.4
구성비	13.5	5.7	14.3	7.4	8.9	4.4	8.9	4.8	<b>13.1</b>	8.3

출처 :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재구성

2008년 산업별 여성 취업자의 비율에 있어 농림어업이 22.3%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상 3차 산업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8.3%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28.7%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성의 1차 산업 종사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9>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 %)

	여 성 근로자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 식 숙박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2004	100.0	<b>27.7</b>	2.3	1.5	35.4	4.6	27.7
2005	100.0	<b>25.2</b>	3.0	1.5	34.1	5.2	31.1
2006	100.0	<b>23.8</b>	2.4	2.1	31.4	4.9	35.5
2007	100.0	<b>23.2</b>	2.0	1.6	29.5	5.8	37.9
2008	100.0	<b>22.3</b>	2.2	1.9	28.7	6.6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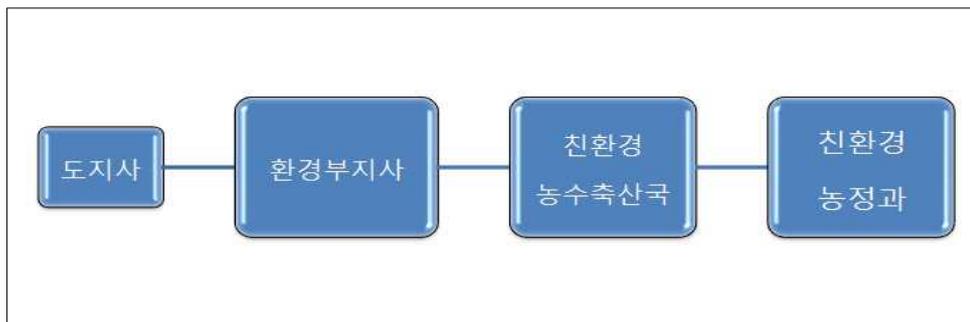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보」 각 년도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개정(200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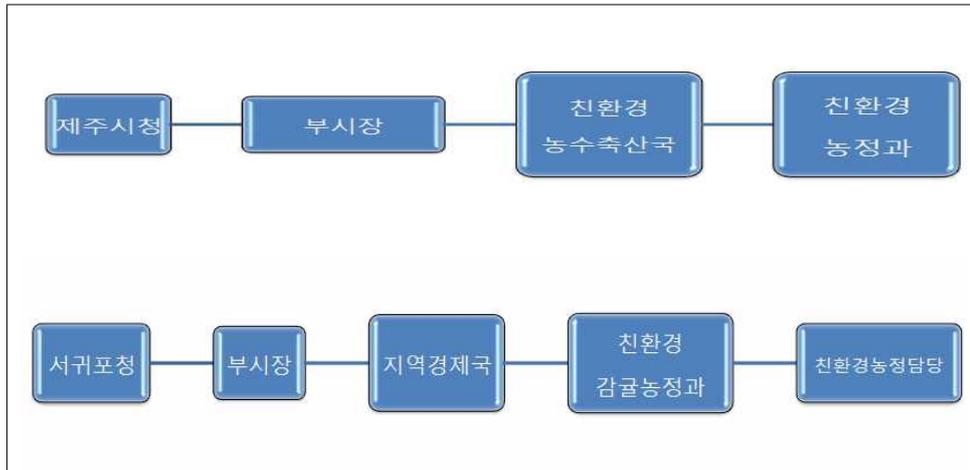
##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를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행정구조상 단일행정체제로 2006년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시군체계가 통합되면서 2개의 행정시가 업무의 추진을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광역단위인 도 단위는 관련 업무의 기획과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10>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 추진체계



<그림 11> 제주시·서귀포시 정책 추진체계



여성농업인 관련 특화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육성법(’05.11.5)」의 개정으로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참여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6년 「여성농업인육성정책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우선 「농업·농촌종합대책<sup>10)</sup>」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추진에 따라 농업의 범위와 외연이 확대되고, 기존의 평균적 지원에서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가의 경우 투자지원을 집중적, 영세고령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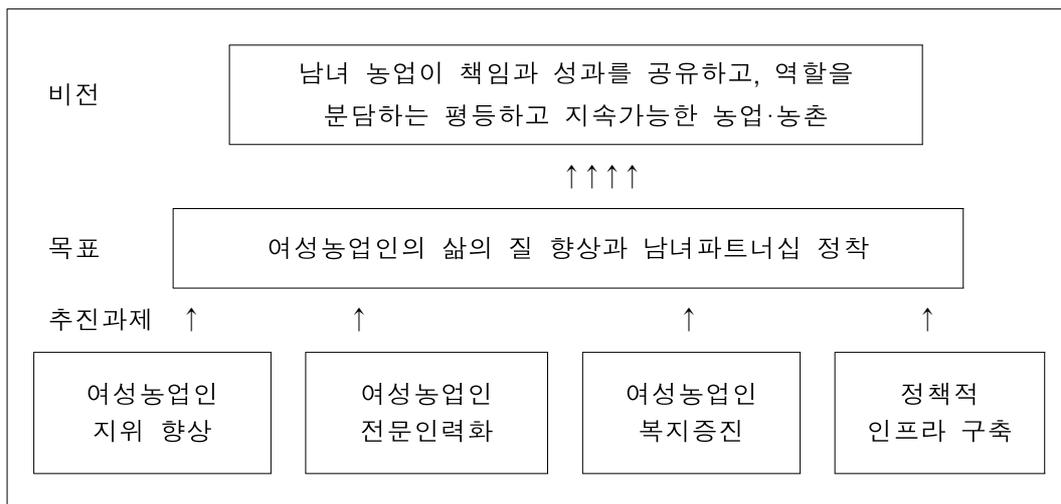
10)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있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은 기본원칙이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함께 발전하는 농업 및 농촌사회로 목표/비전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 핵심 영역을 7개 영역으로 정책에 여성농업인 고려 강화(성인지적 예산 및 추진기구, 정책의 성별 분석기반 조성, 농촌지역 남녀 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등 3개), 지위 확립 및 권리 보호 기반 구축(여성농업인의 지위 확립, 여성농업인육성법/법제적 정비 등 2개),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농업전문인력으로서 직업적 능력, 평생교육과 참여여건 개선, 자기 정체성·자기개발 여건 조성·기초능력 갖추기, 상호 학습조직 육성 및 리더십 개발,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 기초능력 갖추기 등 6개), 사회참여 확대 및 세력화(공공부문 의사결정 참여확대, 정치적 대표성, 민간부문 관리직 진출 촉진, 지역단위 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여성참여 촉진,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평화·통일·환경정책 등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 강화 등 6개), 경제력 강화(가족 내 자원배분 및 의사결정 지위 향상,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적용,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농업부문 정규/비정규 노동자로서 근로조건 개선, 모성보호로서 가정과 직장 양립환경 조성 등 5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모니터링, 여성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권 확대, 여성노인 서비스 확대, 여성장애인·장애인보호 농가·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착 외국인 여성, 취농외국인 및 가족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농가 등 6개), 정책개발 및 추진기반 강화(정책개발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능력개발, 기초실태 분석, 중앙 및 지자체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평가 및 감시·조정기능 등 4개) 등으로 3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의 경우 구조조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역시 함께 추진되었다.

게다가 제주지역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주변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되고 있었다. 농업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 농업인력으로 여성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철저한 인력관리가 필요하였다. 후계인력 선발에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인력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음으로 농업이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외연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기여가 높은 가공, 관광 분야에 있어 여성인력의 전문 능력 강화가 요구되었다. 세 번째로 여성농업인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치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기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보상에 대한 요구 역시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통해 문화향유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 역시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은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수립하였다.

<표 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추진방향

①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 양성평등교육을 읍·면 지역위주로 강화하고, 여성농업인 위주에서 부부단위, 남성농업인, 공무원, 생산자 조직으로 확대
- 농업경영의 파트너로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에 필요한 법·제도개선
- 농업관련 도 단위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 지속추진
- 여성농업인의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를 통해 공동경영주로서 지위 확대
- 농업정책의 파트너로서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 국제결혼 이주 농촌여성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들의 정착과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 도입
-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여성농민의 자질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자 양성교육

②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과 리더십 배양
- 전문 여성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여성후계인력 육성기반을 체계화
-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여성참여율이 높은 부문의 다양한 창업기회를 발굴·지원하고, 창업 연구회의 활동지원을 통해 품질향상 도모
- 농촌지역개발 리더로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관광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으로 양성
- 농기계 보급현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보급주체별 개선방안 마련

③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 농어촌지역 보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영농활동 전념 여건 조성
-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방과후 아동지원을 위한 방과후 교실 운영
- 여성농업인 사회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문화적 소외의 해소를 통해 삶의 만족도 향상

④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여성농업인에 대한 성인지적 통계 수립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전달체계 확립과 지방 정책수행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연구 지속적 수행으로 성인지적 농업정책 개발
- 농업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수립과 함께 연차별 투·융자 계획을 774억원 수준으로 2006년 115억원, 2007년 134억원, 2008년 163억원, 2009년 173억원, 2010년 190억원으로 추정하였다.

<표 2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확대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량(개소)	6	6	6	7	8	10
사업비	4,385	665	720	840	960	1,200
국비	-	-	-	-	-	-
지방비	3,728	566	612	714	816	1,020
기타	657	99	108	126	144	180

출처 : 「2007~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07

###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농업인육성 조례는 주민발의를 통해 추진된 조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007년 9월부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 연합을 중심으로 “제주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제정”을 위하여 3개월간 5천753명의 서명을 받아 “여성농업인의 권위 보호, 복지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주민발의로 청구되었다. 발의한 내용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재정·기술·교육지원 등을 규정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욕구를 수렴반영하고, 여성농업인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농정관련 위원회에 여성농업인 40% 이상 위촉과 경영 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 귀농 및 이주 농업인이 농촌

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주요 골자로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안하였다. 2007년 12월 24일 조례제정 청구인명부가 접수되면서(조례제정 총족 주민수 4,125명임) 조례제정관련 청구내용이 공표되고 주민열람 등을 통해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2008년 3월 3일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심사를 거쳐 같은 달 17일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차 회의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어 18일자 의결되었다.

<표 2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

구분	내 용	비고
2007. 9. 7.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접수 조례제청청구	자치행정과
2007. 9. 10.	조례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전여농(NGO)
2007. 9. 11.	청구취지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	
2007. 9. 14. 2007. 9. 21.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신청/교부(36명)	
2007. 12. 24.	조례제정 청구인명부 접수(총족주민수 4,128명) 5,753명(제주시 2,807명, 서귀포시 2,946명)	농업정책과
2007. 12. 28.	조례제정 청구내용 공표 제주넷 및 도보	
2008. 1. 7. ~1. 17(10일간)	조례제정청구인명부 주민열람 서명 유효·무효결정으로 유효서명인수 5,351명	
2008. 1. 2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08. 3. 3.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안 심사	도의회
2007. 3. 4.	심사 회부	
2007. 3. 17.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2007. 3. 18.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 수정 가결	

『제주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갖는 의의는 광역단위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되었다는 의미보다 전국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가운데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지니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 Ⅲ.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분석

#### 1.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 1) 여성농업인센터의 변천사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로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근거법령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sup>11)</sup>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촌생활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와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 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① 2008년 이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1년 충북 영동, 충남 서천, 경북 안동, 경남 진주 등 전국 4개소가 처음 시

11)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제5호는 “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조는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등의 시설로 규정하였다.

범 운영되었으며, 2002년 전국 18개소로 확대시키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조기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2002년 농림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02.6.29) 및 시행규칙('02.7.13) 제정을 통해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농림부 고시 제2002-50호, '02.10.26)하고 '03년부터 사업에 적용은 물론 사업자 선정 등 제반 행정은 각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맞게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도록 지침을 수립하였다. 대상자는 2001년 시범 선정된 지역을 포함 각 도별 2개소를 선정 지원하였다.

2002년의 경우 지원대상 사업을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및 안내(필수), 여성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필수), 농촌 현실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교류사업,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필수) 등 4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결국 센터별 12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표 25> 2002년 집행세부기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종사인원에 대한 급여</li> <li>· 상시 종사인원에 대한 퇴직충당금(10~12월 기간 중 평균급여로 지급)</li> </ul>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비:차량유류대 및 차량수리비</li> <li>· 강사수당:사업추진과 관련 초청강사에 지급하는 수당</li> <li>· 급식비:중식, 간식비(이용자 부담으로 해결)</li> <li>· 공공요금: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우편요금 등</li> <li>· 의약품비:의약품구입비</li> <li>· 출장비:종사자 출장비(연간 40만원 이하)</li> <li>· 행사보조 인건비:사업추진과 관련 행사기획 및 행사추진 보조자 인건비</li> <li>· 시설유지비:시설의 자산가치를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 및 수선비</li> <li>· 수수료:협회비, 보육사 건강검진비 등</li> <li>· 교재교구구입비:장난감, 아동도서, 비디오교재 등</li> </ul>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비:센터의 난방용 연료비</li> <li>· 사무용품비:사무용소모품 구입 등(연간20만원 이하)</li> <li>· 회의비:행사기획 및 추진에 따른 회의 등(연간40만원 이하)</li> <li>· 시설임차료: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물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120만원 이하 지급</li> <li>· 홍보비: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 소식지 발간 등</li> <li>· 보험료:상해보험료, 자동차보험료, 화재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적립식이 아닌 소멸식으로 가입)</li> <li>· 사업추진에 직접 필요한 물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트, 스캐너 등) 구입</li> <li>- 상담실 집기류(책상, 소파, 탁자 등), 전화기, FAX기 등 구입</li> <li>- 보육과 관련 책상·의자 및 공부방 책상·의자 등 구입</li> <li>- 난로, 선풍기, 주방기구(식탁, 싱크대 등)</li> </ul> </li> <li>·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li> </ul>
-----	---

그러나 2003년 사업예산의 동결로 2002년 사업자를 2003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각 도별 2개소씩 18개소가 운영되었다. 사업비는 1,454백만원으로 국비 855백만원, 지방비 599백만원이며, 센터당 81백만원으로 책정 지원하였다.

2004년 다시 9개소에 대한 신규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전국적으로 27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면서 여성농업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표 26> 2004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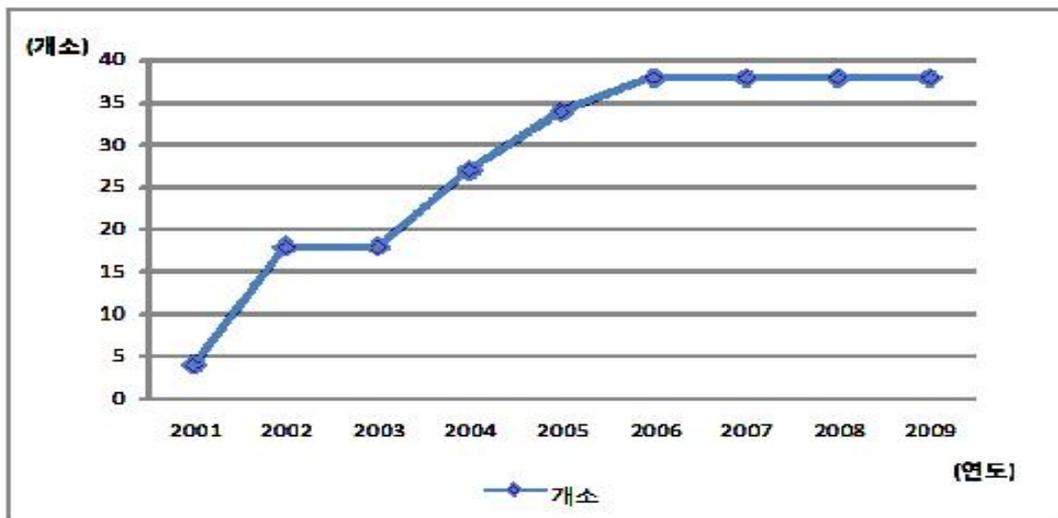
(단위 : 천원)

	사업규모	보조비율	
		지방비	자부담
기존	108,120(국고 54,060(50%))	37,842(35%)	16,218(15%)
신규	122,880(국고 61,440(50%))	43,008(35%)	18,432(15%)

2005년 7개소 추가로 전국적으로 34개소가 운영되었으나,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의 지방이양이 결정되면서 분권교부세로 1,372백만원, 지방비 1,871백만원으로 모두 3,243백만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농촌보육·정보센터로 업무를 확대시키면서 12개소 912백만원을 별도로 지원하였다.

2006년 전국 73개소로 실제 운영되는 센터는 3개소가 추가된 37개소가 운영되었다. 사업비는 5,143백만원으로 실제 4,200백만원, 분권교부세 2,600백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확보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또한 2007년까지 여성농업인센터 기능 개편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농촌형 복합기능수행과 보육사업 개선방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림 12> 여성농업인센터 연도별 증가 추이



2007년은 전국 39개소로 사업비 44억원(지방비 38억원, 자부담 6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추진주체로 운영되었다.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으로 사업목표가 현저히 미달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운영지침, 지원

예산 동결, 시설운영기준 강화 등 오히려 운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졌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7> 여성농업인센터 개설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개소수	4	18	18	27	34	38	39
사업	시범	시범	정책사업	정책사업	정책사업	정책사업	정책사업
지자체 지원 (도 지원)	없음	없음	제주 2	제주 2 경북 11	제주 2 경북11 경남 1	제주 3 경북11 경남 1	제주 3 경북11 경남 1
기초지자체 사업	없음	4개소	4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지원 금액	국비		850	855	1,412	-	-
	지방비		595	599	988	3,176	3,624

출처 :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2006.8

※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

② 실용정부(2008년 이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타)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7호]」 제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문화활동 등을 시설로 정하였다.

그리고 제4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수, 영유아 및 아동의 수, 보육 및 교육·문화시설의 수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제5조에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영유아 보육 및 교육·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개정 2008.2.29>하도록 하였다.

기존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앙부처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부 규정이 바뀌었으나,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을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체계의 구축,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상담과 자금지원,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건강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지침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결국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원인은 여성농업인이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이 당사자로서 농촌에 거주하면서 가장 필요한 “고충상담, 농촌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 정주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의 결과였다.

그러나 당초 여성농업인센터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1시·군당 1개소 수준으로 2006년 73개소, 2007년 99개소, 2008년 163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여성농업인센터마다 사업의 동기나 운영 내용의 차이로 인해 운영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동일한 지원으로 개선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2)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여성농업인센터는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필수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행을 하고 선택사업의 경우 센터 사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사업으로 보육(36개소), 방과후 공부방(36개소), 상담(37개소), 문화(37개소), 기타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 취미프로그램이며, 선택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에 맞게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선택사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육 의무화”에 따라 시설 규정은 물론 저출산에 따른 보육아동을 확보하는 부분 역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연구 자료에서 필수사업에 대한 전국 센터 조사 결과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사업에 대한 논란과 문제 제기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육 사업이 가장 큰 문제로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들의 22.7%만이 필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필수사업을 축소하고 선택사업을 강화하여 센터 운영 및 역할의 효율성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6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선택사업의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으로 28.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관련 상담사업 23.8%, 공부방 사업 20%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보육과 문화·취미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비교적 소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농업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여성농업인센터가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우선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여성농업인센터 사례 조사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선진지로 서천, 거창, 함양, 안동 등 4개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기간 : 2009년 8월 4일 ~ 2009년 8월 6일
조사자 : 정영태, 김옥임, 현진희 등 3인
조사목적 :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지 사례조사

#### ① 서천여성농업인센터

서천여성농업인센터는 2001년 농림부로부터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자로 전국 4개 지역을 시범 선정되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교육, 도·농교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시작하여 마을 공동체 복원 등의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공동 민박, 체험마을 등을 운영하면서 마을주민이 여성농업센터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서천여성농업인센터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00-1
전화 : 041-952-3356
홈페이지 : <a href="http://new.hi-farm.com/store/D03220/">http://new.hi-farm.com/store/D03220/</a>

<사진 1> 서천여성농업인센터 전경



여성농업인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 농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농촌이라는 공간에 적응하는데 물론 어렵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잘 정착하는데는 시아버님의 영향이 저에게 가장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농원을 가꾸신 것이 아버님이어서 아마도 농촌의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일깨우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2> 서천여성농업인센터 어린이집



<사진 3> 서천여성농업인센터 연계 민박집 표식



<그림 13> 서천여성농업인센터 홈페이지



서천여성농업인센터의 특징은 여성이 변화하면 마을이 변화한다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주축이 되어 마을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처음 마을에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때가 1986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여성은 협업의 주체가 아니었으며, 무상노동을 제공하는 가족종사자로 인식이 되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을 지나면서 여성이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농장 경영에 있어 직거래를 통한 소양다품종으로 점차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생각은 농촌으로 오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을 한창 고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여성농업인이 소득 창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장점이 있는 영역을 선정 지속적으로 공동체 즉 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당시는 동백축제, 조개 캐기 체험을 중심으로 팟스테이를 운영하였으며, 2001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면서 마을사례 발표를 통해 20억의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받았으며, 2002년 경진대회를 통해 일본 오이타현의 아지무(그린투어리즘)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농촌변화 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23개 농가가 팟스테이를 운영하는데 동참하고 있으며 1달 1가 구당 소득은 평균 30만원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약배정 등을 통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회관, 정보화 센터 운영 등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농업인센터의 주축 연령대는 40~50대를 중심으로 서천 주변의 장항과 마서마을 등 3개 마을을 주요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농민 위안잔치, 도시민이 함께 하기 등을 추진했으며, 23개 농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여성농업인센터가 수행하였다. 또한 마을 만들기와 네트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자매결연 매칭서비스를 단순한 매칭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마을을 묶어 1차 생산물을 가공하여 고추장, 마늘장아찌류 등의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전환 농가 소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서천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은 자아실현-여성농업인 마케팅교육(3회), 쌀사랑·농촌사랑 그림대회(1회), 전통음식문화 전승교육(2회), 생명캠프(1회)-, 농외소득-도농교류 활성화 체험학습장(70회), 여성농업인소득개발사업(4회), 지역활성화를 위한 문화마당(1회)-, 지도력-여성농업인대회(1회), 선진지 견학(2회), 여성농업인리더십교육(3회), 양성평등교육(2회)-, 복지활동-문예발표회(1회), 이주여성문화활동(6회), 독거노인 및 한부모가정 돌보기(12회), 찾아가는 여성농업인교육(6회)-

등 모두 115회, 연간 1,505명, 연인원 4,410명이 사업에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천여성농업인센터의 가장 큰 목표는 개별 여성농업인센터가 특화되어 센터장의 지위를 높일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있어 센터별 하나의 가공품 개발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전국 개별센터의 센터장이 명강사가 되어 여성농업인의 멘토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의 개별 센터 구조를 인식하고 센터별 특성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 ② 거창여성농업인센터

거창여성농업인센터는 2002년 설치된 센터로 찾아가는 마을교실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아리 운영, 야생초반 운영, 합창단, 영상반 등의 특별활동반을 운영함으로써 동아리 형식의 지속적인 활동이 센터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거창여성농업인센터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1

전화 : 055-943-5180

종사자 : 보육 3, 취사 1, 기사 1, 상담 1, 시설장 1

홈페이지 : <http://gchwfc.or.kr/>

거창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보육사업, 방과후 공부방, 농한기 문화활동, 교양강좌,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내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교실 등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내 유아·아동을 돌볼 수 있는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매년 책자나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센터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이다.

<사진 4> 거창여성농업인센터



<사진 5> 거창여성농업인센터 소식지



거창여성농업인센터의 장점은 100여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매년 책자나 소식지 발행 등을 통해 센터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이다.

거창은 소도시로 마을에 어린이집이나 탁원 등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시설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결국 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에서 여성 농업인이 가장 정실한 돌봄노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죠, 결국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은 여성농업인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고 봅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과 돌봄공간이 제공되니까요

<사진 6> 거창여성농업인센터-어린이집



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집중적으로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은 고재, 웅양, 주상으로 북상면을 중점적으로 3개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센터들과 마찬가지로 가족 탐사행사, 농민한마당, 가족여행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사업으로 생활개선회, 한여농, 전여농과 함께 하는 농민한마당 사업이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잠시 거창의 활약을 이야기하면 2002년 60세 이상의 여성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처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을 함께 주1회 8회기를 실시 하였으며, “생활소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2회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포장가공교육(4회), 도자기교육(10회기), 역사탐방 7회, 특별강좌 6회기, 청소년 문화탐방, 도농 교류 등을 2002년 한 해 동안 추진하였으니 얼마나 바빴는지... 그리고 2003년 역시 부모교육, 정기상담, 풍물교실, 정보화교육, 농민가

족캠프, 센터 연수, 도자기체험, 초청강연, 천연염색, 부모교육, 친환경농업지 견학, 풍물교육, 상담학교, 마을 잔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 밖에 취미교실로 전통춤 배우기, 우리소리 배우기, 천연염색을 하였는데 평균 60명씩의 여성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단순히 취미교양에만 치중하기보다 여성농업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여성농민대학을 개설하여 농한기 때 강의 수업을 진행하고, 부모교육과 정보화교육, 영농교육, 초청강연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센터의 동아리 관련 활동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센터의 사업 활성화에 있어 무엇보다 활동층 또는 이용층이 매우 두터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센터 동아리 가운데 산악회는 30대에서 50대가 주축이 되고 있고, 향창반은 50대와 60대가 주축이 되어 있으며, 풍물의 경우 30대와 40대가 주축이 되어 서로간의 연령별 네트워킹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성농업인센터의 투명화를 위하여 법인으로 출발하였는데, 법인화를 통해 사업의 확장은 물론 행정과 연계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센터가 2008년 2월 도청으로부터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센터 사업은 개인 사업 중심이었다면 법인화를 통해 공공성 확보를 함으로써 사업의 확장으로 오히려 행정과 연계된 사업들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센터의 법인화 과정에서 얻어진 경

과로 법인화가 오히려 센터 사업 추진의 활력이 된 셈이죠.

거창여성농업인센터의 장점은 주변 지역이 읍면지역으로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에 유아·아동보육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결국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요건 가운데 보육에 중점을 두고 센터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 여건이 센터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있어 스포츠댄스, 체질침, 찾아가는 건강교육사업, 부부 집단상담, 청소년(목욕쿠폰)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한 상담사 도우미 양성, 좌욕사업, 야생초 동아리, 영상교육, 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보육교실,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부정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면에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 ③ 합천여성농업인센터

합천군은 ‘합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교육 강화, 복지 향상, 여성농업인단체 및 시설 지원 등 여성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조례로 이는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439-12

전화 : 055-931-8205

합천여성농업인센터는 특색 있는 부정기사업<sup>12)</sup>의 경우 연간 17회를 추진함에 따라 월 1.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5명 정원에 23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공부방의 경우 23명 정원에 63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년제 공부반으로 운영함에 따라 1~3학년, 2~4학년, 5~6학년으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 23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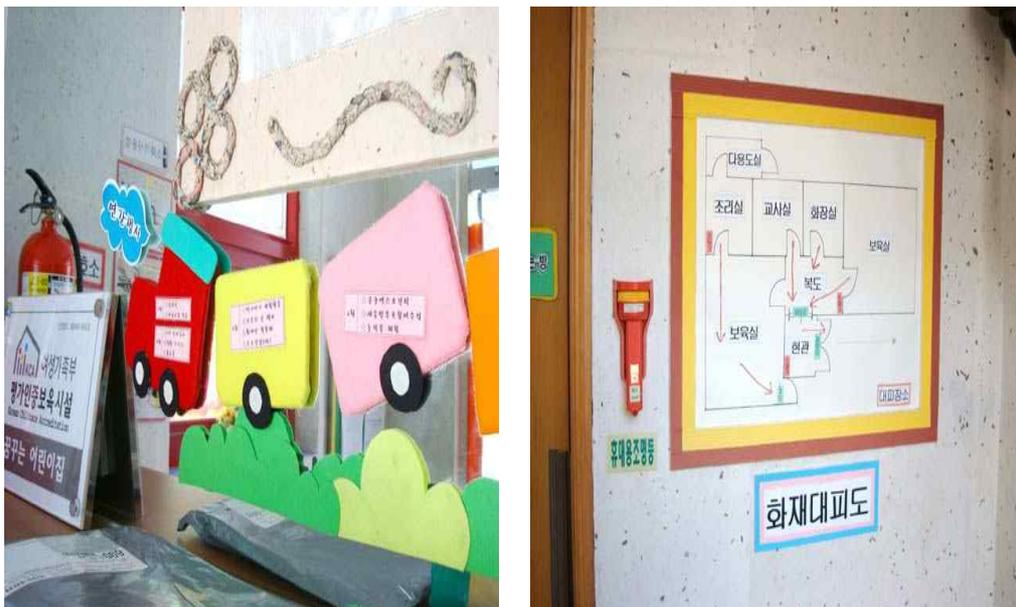
합천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을 리더로 키워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 내 다양한 이슈를 여성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데 적극적이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센터들이 무한 이용을 판방하고 있으나, 저희 센터의 경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천원 쿠폰제”를 실시하여 당사자 참여제를 통해 적극적인 센터 참여자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합천여성농업인센터의 장점이며, 역량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12) 합천여성농업인센터는 2004년 개소한 이래 할머니 한글교실(2004~2005년), 여성농민대학(2004~2005년), 부모교육(2004년), 3대가 함께하는 고향사랑 한마당(2004~2006년), 염색강좌 및 노래교실(2004~2005년), 여성농민한마당(2005년), 도시민의 농사체험 및 도시와 농촌소비자와의 만남(2004~2006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의 경우 여성농민교육사업, 농민한마당, 찾아가는 마을회관사업, 소외된 이웃 지원사업, 건강진료사업, 여성농민 문화, 역사 탐방, 농업농촌사랑 글짓기 대회, 찾아가는 상담사업, 아동청소년 현장체험 기행 등을 기획하였다.

<사진 7> 합천여성농업인센터 전경



<사진 8> 합천여성농업인센터 내부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원 쿠폰제의 경우 각 행사별로 1인당 천원을 받고 있으며, 받은 금액은 연말에 자선활동을 위한 기부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생활개선회, 전국여성농민회 등을 비롯하여 10여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천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메론 직거래 하는 활동을 통해 생협을 육성하고 있으며, 각종 동아리 모임의 경우 식비를 내서 직접 희망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차 등을 학습하고 있으며, 현재 읍으로 센터가 일부 진출해서 사무실과 도서관을 시내 중심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진 9> 함천여성농업인센터(시내) 도서관



#### ④ 안동여성농업인센터

안동여성농업인센터는 안동시로부터 건물을 무상 위탁 받는 형태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즉, 건물유지비와 관리비를 자부담으로 초등학교를 위한 공부방 35명, 중등학생 25명이 이용하고 있다

안동여성농업인센터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606-2 복지회관 1층

전화 : 054-823-0030

홈페이지 : <http://www.ziweu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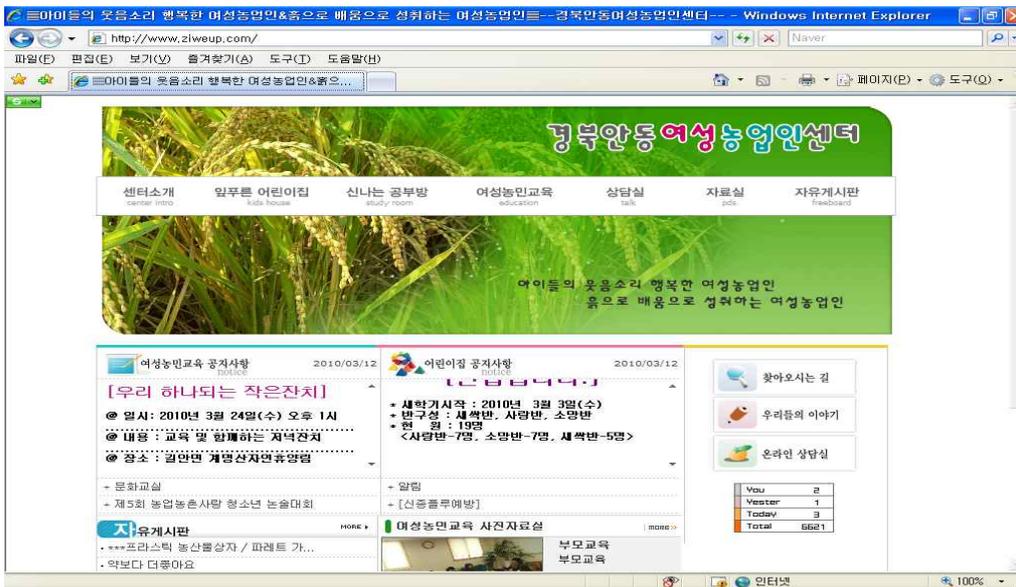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 건물을 위탁하게 되면서 “시 소유 건물위탁”이라는 조계가 맞들어졌습니다. 건물 위탁을 통해 센터 운영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사진 10> 안동여성농업인센터



또한 안동여성농업인센터는 기존의 37개 센터 가운데 양구, 횡성, 서천, 진안, 임실, 고창, 장성, 진주, 거창, 함안, 창원 등 12개소<sup>13)</sup>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4> 안동여성농업인센터 홈페이지



13) 횡성군 역시 군에서 구소방서 건물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횡성여성농업인센터 위치>

<http://www.hsyeonong.net/>

우리 아동여성농업인센터는 마을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달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7년째 마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당사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어 매우 만족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사진 11> 아동여성농업인센터 시설



아동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청·장년층을 위한 약초 등 일상생활에서 학습을 하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30대를 위한 사업은 특화되어 있지 않으나 30~40대를 함께 연계하여 여행 및 탐방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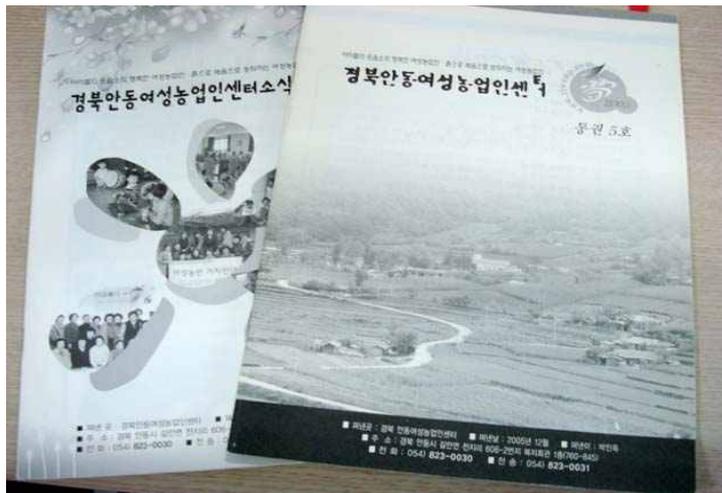
우리 센터는 상행모임으로 “산악회 동아리”와 문화교실을 특화하고 있고, 지

역적으로 노인인구가 많다보니 농한기를 이용한 문화교실을 어르신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하여 댄스교실, 편육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진 12> 안동여성농업인센터 프로젝트 사업 공모



<사진 13> 안동여성농업인센터 정기 소식지



<사진 14> 초등학교 옆 센터 위치(센터 앞 놀이터)



안동시 우수 사례 발표 - 2005.

여성농업인센터 복합기능

1. 연령대를 망라한 이용자층으로 본 복합기능
2. 시설과 사무기자재, 종사인력 활용면에서 본 복합기능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으로 본 복합기능

안동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종사자가 가장 많은 7명으로 보육, 유치부, 초등, 중등 등 길안면에서 돌봄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길안면은 안동 외곽지역으로 어린이집이 전무한 실정으로 보육 시설로 높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보육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연계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연계되어 여성농업인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안동여성농업인센터는 사업을 크게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육·문화활동으로 조약(造藥)을 배웁시다(16회), 여성농민 가치 진단(1회), 베트남 문화 속으로(1회), 센터 산악회(4회), 마을교육(12회), 청소년 성장캠프 ‘뽀다 VI’(1회), 제4회 농업·농촌사랑 청소년 논술대회(1회), 지역민을 위한 초청공연 ‘노름마치와 함께 하는 신나는 예술여행’(1회), 여성농민 CEO 방문-여성농민영농조합법인 견학(1회), 겨울문화교실-민요교실(12회)로 모두 연간 50회, 연인원 1,837명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타 사업의 경우 신나는 어린이 연극교실과 함께 만드는 마당극(나무꾼과 선녀), 주민들과 함께하는 잎푸른 어린이집 재롱잔치 등이 있다.

#### 4) 여성농업인센터 사례 조사 시사점

여성농업인센터의 선진지로 서천, 거창, 함양, 안동 등의 사례 조사를 통해 드러난 시사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보육 등 돌봄시설이 없는 지역이 유리

기존의 보육시설이 이미 있는 지역이 전무한 실정으로 대부분 보육이나 돌봄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돌봄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센터들이 생겨남에 따라 유아동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아동들을 모집하여 센터 필수사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② 시 단위에 1개 정도 센터 운영

대부분의 선진 사례로 찾아간 센터들의 경우 한 지역에 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센터 선정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센터 특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

센터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형식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역량 강화는 물론 사업 영역확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④ 동아리 모임 활성화

사례조사 지역의 장점으로 마지막을 꼽는다면, 지역별로 산행, 약초모임 등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종결 이후 후속 과정을 거치면서 자생적인 동아리로 남아 센터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태

### 1) 제주여성농업인센터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센터가 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개설 연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소수	2	2	1	-	1
지역	함덕, 성산	안덕, 하원	대정	-	김녕
제주시	1		-	-	1
서귀포시	1	2	1	-	-

여성농업인센터는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포괄적으로 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모두 86,988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하며, 여성인구는 42,693명으로 제주도 전체 여성인구의 15.1%에 해당된다.

<표 29> 여성농업인센터 지역 인구

(단위 : 명)

	계	제주시		서귀포시			
		구좌읍	조천읍	성산읍	안덕면	대정읍	중문동
전체인구	86,988	15,359	20,808	14,559	10,183	17,197	8,882
남자	44,295	7,709	10,666	7,507	5,119	8,737	4,557
여자	42,693	7,650	10,142	7,052	5,064	8,460	4,325
세대수	36,406	6,017	7,717	8,838	3,839	6,672	3,323

출처 : 2008 제주특별자치도통계연보, 20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경우 대부분 보육시설 운영과 부정기사업으로 크게 양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센터들의 사업이 서로 크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크게 취미교양강좌, 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양분할 수 있다.

대정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찾아가는 마을교육을 중심으로 김녕여성농업인센터는 취미교실 및 교양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정여성농업인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면 2007년은 7개 분야로 사업을 구분하여 고충상담으로 3개 분야 가족, 청소년 상담, 기타 상담으로 선정하였으며, 영유아보육으로 2세반, 3세반, 4세 이상반을 운영하고, 방과후지도 초등 1~3학년 대상 독서지도교실, 평일 방과후 지도교실 등 2개 사업 운영, 여성농민지도력개발교육으로 마을사랑방교육, 일상적인 생활강좌, 친환경

선진지 견학, 여성농민을 위한 상담교육이 있으며,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과 함께 하는 사랑 나눔, 아름다운인연·소중한 만남, 여성농민 한마당을 운영하고, 취미·교양·문화교실 분야로 감물 들이기 체험, 생활한복 만들기, 함께하는 오름기행, 종이공예, 향아리 난 붙이기, 함께하는 건강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타사업으로 재봉틀동아리 운영, 오름동아리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2008년의 경우 2007년과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공동체 지원 사업에 있어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기행, 어린이날 후원, 풍물교실 등이 추가되었으며, 취미·교양·문화교실 분야에 있어 홈패션, 생활소품 만들기, 실내원에 꾸미기, 함께하는 건강교실, 기타 사업으로 친환경동아리 등이 새롭게 구성 운영되었다.

2009년 역시 여성농민을 위한 농기계교육, 어깨동무 내 동무, 센터 임직원 연수,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기행, 농촌사랑 직거래장터 및 바자회, 일상적인 생활강좌, 토종 종자 지키기 및 체험농장 등을 새로운 사업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2009년 새롭게 기획한 사업의 경우 여성농업인센터의 마케팅력과 재정 확보 등을 위한 직거래 장터가 눈에 띄며, 여성농업인이 농촌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토종 종자 지키기와 체험 농장의 운영은 기존의 보육과 취미 생활 중심의 여성농업인센터의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활동으로 주목할 만하다.

반면 함덕여성농업인센터는 2002년 처음 개소한 센터로 부모교육, 염색교실, 종이접기 교실, 켈트교실, 도자기 체험교실, 건강교실(요가), 여성농업인 교육(2회), 여성농업인 한마당, 역사기행, 취미활동 전시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3년은 풍물교실, 4.3현장 답사, 한지공예, 종이말이, 테마마을 체험학습, 도농교류, 문화유적지 답사, 글짓기 교실, 부모교육 등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취미교양강좌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은 토피어리, 테마여행 등을 추가하여 기존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2005년은 생태체험학습과 비즈공예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오름 나들이 등이 추가로 실시되

었다. 2006년은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음식만들기, 친환경농업교육현장 체험, 유배지 답사, 2008년 어르신 한마당, 국악교실 등이 실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취미교양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녕센터는 2006년 개소한 센터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가장 짧은 센터 운영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지역 여성들의 통합과 함께 아이 돌봄 등을 중심으로 센터 운영의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지는 프로그램은 문인화 교실을 센터 특화사업으로 운영하여 센터에서 자체 전시회를 개최하고, 인근 초등학교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지역에 홍보하고 알리는 일들을 저극 추진하였으며,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욕구를 수용하여 켈트, 비즈, 도자기, 한지 등 공예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운영하고, 초등학생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15> 대정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1)14)



14) 센터 사진의 경우 대정여성농업인센터 자료만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사진 16> 대정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2)



<사진 17> 대정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3)



<사진 18> 대정여성농업인센터 부정기사업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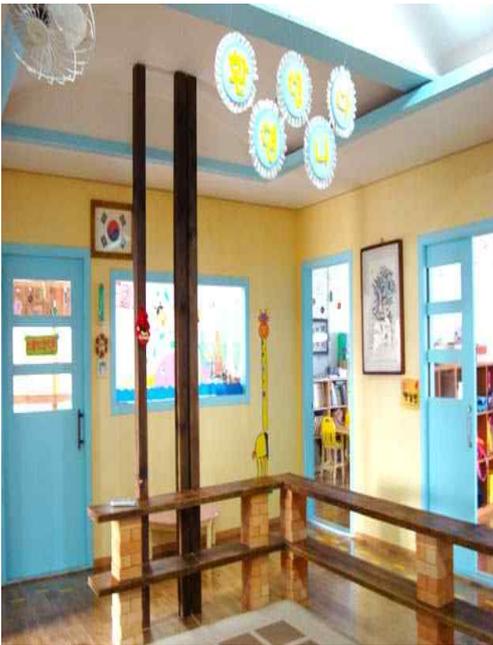
<사진 19> 대정여성농업인센터 전경



<사진 20> 함덕여성농업인센터 전경



<사진 21> 함덕여성농업인센터 내부 및 프로그램 운영



<사진 22> 김녕여성농업인센터 전경



## 2)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관련 제주도는 '02년 2개소, '03년 4개소(신규 2개소), '04년 5(신규 1)개소, '06년 6(신규 1)개소 등을 운영하여 왔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가정과 영농 고충해소를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기능이 부재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여성의 주류화와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의 일환으로 센터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당초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 2010년까지 도내 읍·면당 1개소 수준인 10개소를 운영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05년까지 6개소, '06년 7(신규 1)개소, '07~'10년 10(신규 4)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계획수립 당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를 계획함에 따라

'06년 이후 개소당 109백만원에서 '07년 이후 단계적 운영비 지원 확대와 함께 여성농업인센터의 방과 후 교실 확대 운영을 당초 '06년 2개소에서 '07년 이후 도내 모든 센터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육성계획

주요업무	'05	5개년('6~'10) 계획					비고
		'06	'07	'08	'09	'10	
○ 여성농업인센터 확충	5개소	6	-	7	8	10	
○ 운영비 지원 확대(사업비/개소당)	백만원	109	120				
○ 방과 후 교실 확대 운영	개소	2	6	7	8	10	
사업비 투자계획	백만원	665	720	840	960	1200	

출처 : 여성농업인육성정책기본계획(2006~2010). 200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센터 사업을 재공모하는 형태로 심사표를 통해 센터를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654백만원의 사업비(도비 556백만원, 자부담 98백만원)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6개소가 개소당 109백만원(운영비 지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이 지방이양 이후 사업의 질적인 면이 확대되지 못하고 소극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속사업 평가 항목은 크게 당해연도 사업 평가가 55%, 차기년도 사업 평가 45%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당해연도 사업 평가 항목이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기년도 사업의 경우 5개 항목을 구성하여 배점을 하고 있다. 보육의 경우 전체 점수의 10점을 구성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질보다 등록 여부만을 배점으로 하고 있다.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계속지원여부 심사표

<b>계속지원여부심사표</b>					기호
심사대상 : ○○년 ○○여성농업인센터					
심사위원 성명 : _____ (날인)					
..... 절취선 .....		..... 확인(인) .....			
<b>계속지원여부심사표</b>					기호
심사대상 : ○○년					
○○여성농업인센터					
심 사 항 목		배점	평점	심사의견	
당 년 사 업 실 적	○ 보육시설 등록 여부(등록 10, 미등록 0)	10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사업과 무관하거나 부당한 지출시 감점	10			
	○ 교육·문화활동, 고충상담, 복지활동, 농외소득 증진 사업 등 실적 - 계획대비 90% 이상 25점, 80~90%미만 20점, 80%미만 15점 ※ 세부사업별 실적 산출 후 평균점으로 환산	25			
	○ 지역주민 반응 - 지역주민과의 불화, 보육료과다 징수 등 불신요인이 있을 경우 감점	10			
차 년 사 업 계 획	○ 사업계획의 창의성 - 탁월 10점, 우수 7점, 보통 5점	10			
	○ 사업의 내용 -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활동, 지도력 발굴·육성활동, 복지활동(건강증진, 이웃돕기 등), 농외소득증진 사업(도·농교류 포함), 고충상담 등 · 사업의 고른 안배 정도: 우수 10점 보통 7점 미흡일부사업에 편중 5점	10			
	○ 사업량 - 20명 수준 소교육 5종 이상, 100명 수준 참가행사 2종 이상, 2종 이상 지도력 교육 5회 이상, 상담 100회 이상 · 위 사업량 이상 10점 위 사업량 일부미달 7점 위 사업량 전체미달 5점	10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상 : 10점, 중 : 7점, 하 : 4점	10			
	○ 사업추진 협의체 유무 - 유 5점, 무 0점	5			
<b>계</b>		100		<b>적합, 부적합</b>	

※ 감점항목의 경우 감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배점범위내에서 차감하여 평점

※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판정

### 3)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상의 어려움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센터장들의 면담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몇 가지를 간추려 보기 위하여 면담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a) 센터장

사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있어 아동 확보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없지만 점차 아동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센터 운영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과 여성농업인시설의 중간 경계에서 오히려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도 했습니다.

#### b) 센터장

오히려 보육보다는 여성농업인센터의 태생적인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실질적으로 너무 보육에 치중하면서 센터 본연의 업무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보육을 배제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변화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c) 센터장

평가인증 등 보육시설과 관련한 업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여성농업인센터 사업들이 제대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소규모 프랜차이즈에 그치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 구색을 갖추는데 그치고 있는 셈이죠.

#### d) 센터장

우리 센터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금세요. 여성농업인센터가 점점 어

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간략하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센터 운영에 있어 보육 대상 아동 모집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육의 전문성을 지니고 보육시설을 당초 운영하기보다 여성농업인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최근 보육 영역의 전문성 및 대형화,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등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센터 운영을 위한 매뉴얼 부재를 들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보육사업이외, 방과후교실, 여성농업인 상담, 문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과 방과후교실 운영과 달리 문화교육, 상담 등은 전문인력이 충원되어 있어야 하며, 서로 각기 다른 매뉴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사실 제주도내 6개 센터 모두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센터장이 상담사 역할을 겸하고 있으나 이는 초기상담 수준에 그치고 상담 이용 실적 역시 저조할 수밖에 없다.

셋째, 종사자 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 사업으로 보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 보육교사수는 보육아동을 중심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즉 아동수에 따라 교사수가 결정되는데 만 0세에서 만 1세 영아의 경우 아동 3명당 교사 1명, 만 1세에서 만 2세의 경우 교사 1인당 아동 5명, 만 3세에서 만 4세까지는 교사 1명당 아동 15명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센터들이 정원 29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적어도 2인의 보육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육교사와 함께 취사, 운전 등의 인력의 충원이

마련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있어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충원하는데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넷째,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소극적인 센터 운영을 들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읍 단위 규모의 여성농업인센터가 6개소가 있으나 정작 행정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 임의단체로 여성농업인센터가 인식됨에 따라 다기능을 표방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을 보육기능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센터의 고유한 정체성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방과후아동학습지도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여성농업인교육·문화활동 등 기타 부정기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대상 부정기 사업의 경우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일부 운영하는 구조를 드러냄에 따라 여성농업인센터의 실질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IV.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분석과 함의

제주도내 6개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농림부 사업으로 시작, 지자체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제주 여성농업인센터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 여성농업인센터는 군 또는 시 단위 1개소로 이마저도 지역 내 보육 시설이나 사설 학원 등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실질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농업인구는 새롭게 유입되거나 출산 등으로 인구가 변화되기보다 기존 인구의 유출과 정주 인구의 감소로 인구 구성 등이 변화하고 있다. 2008년 제주도내 농촌 거주 인구가 1999년 25.3%에서 2008년 18.2%로 감소한 것으로 이미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농가소득의 감소 등 경제적인 영향과 정주하기 좋은 여건을 찾아 떠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의 현실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는 초기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중앙부처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심요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의 인식과 지원에 대하여 많은 부분 초기 설치 당시에 비하여 열정이 감소하였으며,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여성농업인센터의 당초 취지를 명확히 알지 못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센터 당사자들에게는 홀대라는 측면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강한 특성을 나타냄에 따라 5개소(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가 활발하게 농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영농상담 등 전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여성농업인 정책 역시 여성농업인 육성과 농식품 기술 보급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여성농업인을 협업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인적자원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의미하고 있다.

<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

- 여성농업인의 보유한 기술 활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유능하고 활기찬 여성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활력화 도모
- 전통식문화 계승발전 및 소비자 농업활성화로 도농교류 확대

추진 계획

- 농식품 가공사업 창업 보육 기반 조성 : 1개소
- 제주농산물 가공 등 농업인 농식품 사업 지원 : 10개소
- 소규모 가공사업장 조직화 및 마케팅 강화 : 45개소(신규 10, 기존 35)
- 제주음식 세계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 2개 사업
  - 전통 음식학교 운영(1개소), 전통 식단 보급 : 5개소
-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 14개소
- 농작업 능력 향상을 위한 농작업 편이 장비 개발 보급 : 7개소
- 농업, 농촌 테마체험을 통한 신규 고객 창출 : 10,000명
- 농촌관광 패키지 구축 및 체험농장 육성(8개소) : 4개 사업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선도할 전문 인력 육성 : 200명
  - 농식품 가공 창업, 농촌체험지도자, 청년농업인
- 농가경영을 주도할 여성농업인 육성 : 2,000명

<출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내부자료

결국 여성농업인센터의 정체성 확보와 함께 사업의 특화가 여성농업인센터의 경쟁력 확보와 충실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주도의 인구는 여성이 49.9%로 남성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은 여전히 51.1%(제주시 51.5%, 서귀포시 50.7%)로 높은 실정이다. 결국 농촌을 지키는데 있어 여성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의 경우 매년 공모를 통해서 전년도와 당해연도 사업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동일한 센터가 사업을 지정받고 있으므로 운영 프로그램을 공통화 하여 매뉴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

둘째, 공통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코스에 있어 농업기술원과 사업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6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가운데 체계적인 영농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있어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대정여성농업인센터의 경우 2009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기계 교육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술원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된다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향상시키고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동료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여성농민 관련 사회교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욕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정기적인 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감소하는 농촌의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여성농업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센터의 사업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정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대부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보다는 문화교양 등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역내 유사 프로그램으로 여성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지역내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한 공동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코스 등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로 여성농업인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여성농업인센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보육 기능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기사업이나 임의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가 지역별 특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센터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여성농업인은 농촌의 블루오션으로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여성이 농촌생활에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로 여성농업인센터의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다. 변화하고 있는 농촌을 지켜내는 구성체로 여성들간의 연대방식인 자매애로 연대하는 출발점으로써 여성농업인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

여성사회교육연구원, 2006,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대통령  
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정영태외, 2007,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중기계획(2007~2010)」,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보」, 각년도

\_\_\_\_\_, 「2008년 농업 및 어업조사결과」, 2009. 2.25 보도자료

\_\_\_\_\_,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_\_\_\_\_, 「농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인터넷자료

농림수산식품산업부, 조직도 <http://www.mifaff.go.kr>

서귀포시청, 조직도 <http://www.seogwipo.go.kr>

제주시청, 조직도 <http://www.jejusi.go.kr>

##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 제정 2008. 4. 2 조례 제3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복지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3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제5조 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계, 학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강화를 위해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어업인 위촉비율 40% 이상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강화)**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촌 노인 여성 복지 케어 전문인 교육 지원
5.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6.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 기계장비 개발보급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출산농어가도우미 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확대 강화
2. 사고발생농어가 및 고령취약농어가,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 지원
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공립보육시설 확충
4.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령 여성 농어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

애인의 자립 적극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 체계 구축 및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을 위해 다음 각호를 시행한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3.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도지사는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그 밖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제정 2007. 08. 08 규칙 제8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지사가 수립하는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시책 중 도지사가 자문회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친환경농축산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및 여성능력개발본부장과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임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자문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자문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자문회의 위원과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3.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 전국 여성농업인 센터 현황(2009년 현재)

도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도 (4)	용인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 49-4	031-334-0403
	여주	여주군 흥천면 효지1리	031-881-5588
	이천(신둔)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215-2	031-634-7546
	신김포	김포시 통진읍서암리 759	031-987-0131
강원도 (3)	횡성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54-4	033-345-2468
	양구	양구군 남면 청리 902-6	033-481-9232
	평창	평창군 봉평면 평촌1리 482	033-336-3836
충북 (3)	영동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79	043-742-0435
	청주	청주시 상당구 정상동 161	043-211-5425
	청원	청원군 미원면 수산리 87-5	043-295-2580
충남 (3)	서천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00	041-952-6321
	홍성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14	041-633-0518
	예산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334-2	041-332-7057
전북 (7)	부안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548-11	063-581-1191
	진안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262	063-433-1933
	남원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508	063-636-5399
	임실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2-2	063-642-7800
	지리산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123-4	063-636-1022
	고창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 270-2	063-561-3936
	부안백산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689-1	063-582-0391
전남 (4)	나주	나주시 동수동 41-11	061-335-1288
	장성	장성군 남면 평산리 610-2	061-394-3035
	고흥	고흥군 두원면 용산리 826-6	061-833-0413
	무안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905-9	061-453-4513
경북 (2)	안동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606-6	054-823-0030
	영양	영양군 입안면 신사리 610	054-682-1100
경남 (6)	진주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333-8	055-761-1891
	거창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1	055-943-5180
	합천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439-12	055-931-8205
	함안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30-3	055-585-8880
	사천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62-2	055-854-1074
	창원	창원시 대산면 제동리 537-13	055-251-7611
제주 (6)	함덕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923-7	064-783-3232
	성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03-11	064-782-0606
	대정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791-5	064-794-4497
	서귀포	서귀포시 하원동 1177-1	064-738-1721
	안덕	서귀포시 안덕면 사례리 2395-3	064-792-5111
	김녕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177	064-783-5031

##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정 영 태	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연구자문	김 옥 임	대정여성농업인센터 대표
	현 진 희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제주도연합정책실장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모색

인쇄일 / 2009. 11.

발행일 / 2009. 11.

발행인 / 유 덕 상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시 청사2로 8(도남동)

Tel. 064)726-0500(代)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978-89-6010-129-6 9333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